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2.

발 의 자 : 김용만 · 이수진 · 홍기원
이주희 · 이주영 · 박지원
김남근 · 권철승 · 김태선
문진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,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보호 중인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 놀이시설은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,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
6.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
부 칙

이 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1. ~ 4. (생략) <u><신 설></u> ② ~ ④ (생략)	제32조(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,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</u> 2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 6. 「 <u>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</u> 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u>어린이놀이시설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